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6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이영실, 김경영, 권수정, 경만선,
김혜련, 권순선, 박기재, 최 선,
김경우, 이태성, 이호대 의원
(11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1인 가구,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가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서울의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남. 증가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으로 유기동물 등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반려동물 등록대상의 월령을 「동물보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2개월 이상인 개’로 규정함. (안 제2조제2호)
- 나.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임시보호 근거를 마련하고, 이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0조)
- 다.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서 유기동물로 구조된 길고양이의 안락사 감소를 위해 구조, 포획, 방사 등의 사항을 규정함.(안 제21조제2항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동물보호법」,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월령(月齡) 3개월 이상인 개”을 “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6항”을 “법 제1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에 제3항과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,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 있다.

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해야 한다. 다만,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유기동물 중 길고 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"등록대상동물"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·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<u>월령(月齡) 3개월 이상인 개</u>를 말한다.</p> <p>2의2. ~ 9. (생략)</p> <p>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<u>법 제15조제6항</u>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,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제10조(동물의 구조·보호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 -----.</p> <p>2의2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동물보호센터 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법 제15조제7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동물의 구조·보호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</u></p>

<신 설>

제21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
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
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
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
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
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.

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
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동물
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
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
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
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
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동물을 보호조
치하고 있는 자는 제11조에 따른
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반환을 요
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
야 하며,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
센터의 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0
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
않은 경우 보호조치하고 있는 자
에게 우선 입양 또는 기증할 수
있다.

제21조(길고양이의 관리 등) ①
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
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
하여야 한다.

② ----- 길고양이
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
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
에 방사해야 한다. 다만, 길고양

<신 설>

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.

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제11조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.